

2020 안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

이 자료는 2020년도 안산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사업별로 지원 대상 및 자격,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 안산시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연초 사업계획으로 단위사업별 세부추진내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ontents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내 4
- 1. 안산시 주요사업
- 주요사업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 6
- 주요사업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 8
- 주요사업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 건립 •10
- 주요사업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11
- 주요사업 반월·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운영 12

2.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14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15
-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16
-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17
- 3. 창업 및 혁신성장 사업화 지원
-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 20
- 창업 페스티벌(SUFIA) 개최 · 21
- 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 22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 23
- 시제품 제작 지원 · 24
- 미래혁신기술 융합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 25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26
-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27
- 기술닥터 사업 · 28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 29
-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30
- 안산 IT·SW기업성장지원사업 31
-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 32
-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 · 33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 · 34
- 청정 공정 확산 사업 · 35

4.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해외유망시장 개척단 운영 38
-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39
- G-Fair Korea 안산시 단체관 운영 · 40
- 해외지사화 사업 41
- 맞춤형 국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42
-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43
-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경기TP) · 44

5. 기업환경 개선 지원

- 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 · 46
- 기업 SOS넷 운영(기업애로 해소) · 48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49
- 기업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50
-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 51

6. 기업민원 처리

- ONE-STOP 공장설립(등록) 민원 처리 · 54
- 건축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55
- 도로 점용허가 민원 처리 56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기타 제증명 발급 ·57

7. 일자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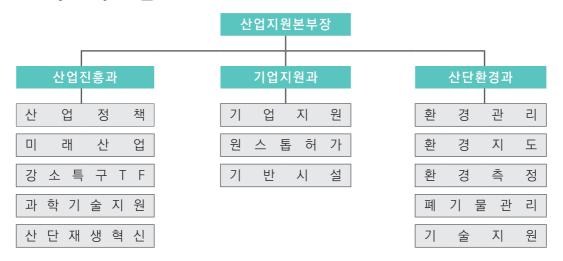
-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 60
- 안산919 취업광장 운영 **61**
-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62

8. 기타 정보

- 중소기업 확인 요령 · 64
-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요령 ·65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 66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69
-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74
-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연락처 · 75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안내

● 조직: 3 과 13 팀



● 주요업무

부 서 명	주 요 업 무
산업진흥과 (481-2102)	산업 구조개선 및 정책 개발 안산스마트허브 재생ㆍ혁신 추진 안산스마트허브 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과학기술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ASV) 활성화
기업지원과 (481–2281)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 기업SOS시스템 운영 등 기업애로 해소 건축인·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공장설립 및 등록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정비 산단 내 제설 및 수해 대책
산단환경과 (481-2896)	산단 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점검 환경오염 배출업소 교육 및 지역에코혁신 사업 악취종합 상황실(U-Clean 통합시스템) 운영 산단 내 폐기물·토양·비산먼지·소음진동 관리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및 기술 지원 염색단지 백연(OIL-MIST)제거 개선사업

제 1 장

안산시 주요사업

- 주요사업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 주요사업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운영
- 주요사업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 조성사업
- 주요사업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 주요사업 반월 · 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운영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 재생사업 개요

• 기간/위치: 2015. 2. ~ 2025. 12. / 염색단지와 서해선 일원

• 규모 : 5,722,600㎡(반월산단의 39%) • 사업비 : 468억 원(국비 234, 지방비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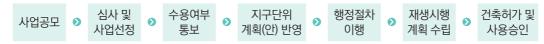
• 사업내용 : 기반시설 확충, 유치업종 첨단화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 기반시설: 진입도로 신설(0.8km), 주차장(6), 공원(4), 도로정비 1식

- 민간개발: 민간공모를 통한 복합용지개발(258,000 m²)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시행계획(복합용지) 공모

- 추진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6
- 복합용지 개요
 - 공모 위치: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전환가능 지역
 - 대상 면적: 258,000m²(산업시설용지만 해당)
 - 공모 일정(응모 기간): 2019, 12, 30, ~ 2020, 3, 28,(90일간)
 - 참가 자격
 - ·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8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은자
 - 평가·심사 계획
 - · 안산시 산업단지 재생추진협의회(공모심사위원회) 심사 후 사업선정 예정
 - 사업신청 등 작성지침
 - · 안산시 공고 제2019-2228호(2019, 12, 30,) 공고문 및 공모지침서 참고
- 복합용지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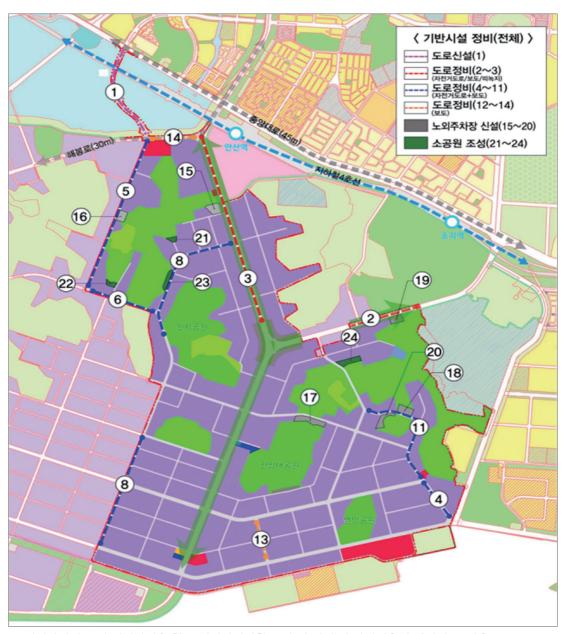


[복합용지 개념도]



[※] 산업시설 외 지원시설의 허용용도는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의 일반공업지역 허용용도로 한함.

재생사업지구 현황도



※ 재생사업지구 내 재생사업은 향후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위치 및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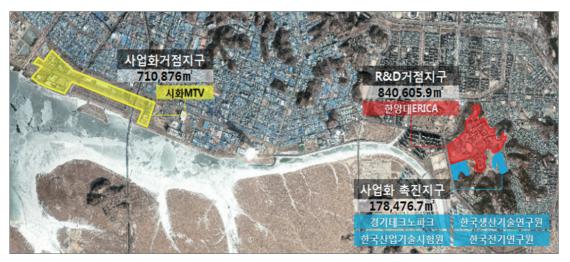
문 의 처 관련기관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단재생혁신팀 Tel. 031-481-2856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Tel. 044-201-3681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운영

● 특구개요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사동 및 단원구 성곡동 일원



• 지구별 기능

구분			주요기능
기술핵심기관	R&D 거점지구	한양대학교 ERICA	연구개발, 기술사업화지원, 인력양성
		경기테크노파크	지역혁신 사업/배후 산업단지 거점
	사업화 촉진지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 인력양성
배후공간		한국전기연구원	전력 IT, 전기기기 등 기술개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평가, 인허가 관련 시험/인증지원
	사업화 거점지구	시화MTV 산업단지	기술이전 기업 입주, 창업공간 활용

• 특화분야: ICT 융복합 부품 소재

• 주요내용 : 기술핵심기관(한양대 ERICA)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기업에 이전하여 'ICT융복합 부품소재'(특화분야) 기술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혁신기업 육성

● 연구개발특구 입주혜택

- 특구 육성사업 참여
- 입주기관이 특구법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으로 승인·지정 받은 경우 아래의 세제혜택 지원

세제혜택

• 소득세·법인세 (국세) : 3년간 100%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지방세) : 5년간 50% 감면

• 재산세 (지방세) :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연구소기업 요건	첨단기술기업 요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설립 자본금 중 20% 이상을 직접 출자해 연구 개발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보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 이상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이상

● 입주(변경) 절차

입주 승인신청 (신청인→진흥재단) 신청사항 검토·승인요청 (진흥재단→과기부) 전토 및 승인 (과기부→진흥재단) 승인내용 통보 (진흥재단→신청인)

문 의 처 관련기관 강소특구지원본부 강소특구지원2팀 Tel. 031-400-48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Tel. 044-202-4743



안산스마트허브 행복주택 건립

• 사업개요

• 기간/위치: 2015. 4. ~ 2021. 3. / 단원구 원시동 782번지(원시운동장)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공급 232세대(산업단지 근로자 90% 및 고령자 10%)

- 대지면적: 6.457.4m²(공동주택 부지 5.655m², 도로신설 802.4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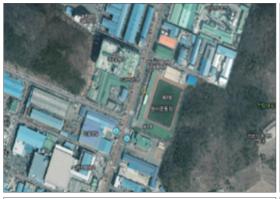
- 연면적 : 9,475.1 m² (지하 1층 / 지상13층)

연번	세부공급면적(㎡, PY) 단위세대(전용면적) 단위 ㎡	공급호수	대상자	임대료	비고
1	17m²(5평)	112	근로자	주변시세의	원룸
2	22㎡(6.6평)	120	근로자	80%	원룸

사업비: 18,224백만원시행자: 경기도시공사

● 지원내용

-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80%)
- 보증금 이자지원(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액 40%)
-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성(근생시설, 옥상정원 / 캠핑시설, 휘트니스센터 등)





위치도

조감도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단재생혁신팀 Tel. 481-3588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

• 사업개요

• 위치: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화랑유원지 내)

• 규모 : 부지 13,000㎡, 연면적 5,039㎡(지하 1층, 지상 3층)

• 사업기간 : 2012. 11. ~ 2021. 11.

• 사업비 : 25,000백만원(건축 17,067 / 전시 6,120 / 감리 1,813)

• 주요시설: 전시시설·교육시설·수장시설·휴게편의시설·야외전시장 등

• 소장품 공개구입 안내

- 수집대상
 - 안산소재 기업에서 생산된 분야별 부품 및 완제품
 - 근대 산업 관련 산업 기계 및 대표적인 생산품, 목록집
 - 산업단지 및 기업 초기 사진, 영상, 인쇄·기록물, 도면 및 지도류
 - 근로자 개인물품(작업복 및 도구, 업무수첩, 작업일지 등) 및 근로 관련자료
 - 산업관련 예술품(산업부산물을 활용한 조형물 등) 및 기타
 - 산업화 이전 인근 지역사자료(역사문화, 민속, 예술, 생활사 등)
- 신청기간 : 연 2회 공개구입 공고시 신청 접수(상하반기)
- 구입절차 : 서류접수 → 예비 심사 → 실물접수 → 감정평가위원회 심의 → 선정 및 구입계약

● 홍보사진



조감도



건립부지



전시연출(안)

문의 처 문화예술과 박물관건립팀 Tel. 481-3439



반월·시화 스마트산업단지 지정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별기업의 스마트화를 넘어, 산업단지 내 기업간 데이터 연결 · 공유로 동일

업종·밸류체인 기업들이 스스로 연계·스마트화 되는 산단 구축

대상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스마트산단사업단 구성(2019. 3. 28.)

-위치: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3층

• 추진전략(목표)

- 산단 내 스마트공장 확산 및 데이터 공유型 「제조혁신」
- 「쾌적한 근로·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 만족도 제고
- 「창업과 신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문 의 처 관련기관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산업정책팀 Tel. 481-2102 경기반월시화스마트산단사업단 Tel. 070-8895-7581

제 2 장

자금 지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내 소재 중소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모든 업종)
-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조례 제2조 제4호의 지식 · 정보산업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융자규모 : 1,200억원(상반기 700억원, 하반기 500억원)
- 지원방법: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대출하고 이자차액(1.5~1.75%) 보전 ※ 여성기업 중 안산시중소기업대상 또는 장관급이상 수상 업체에 대해 0.05% 추가 지원
- 융자한도: 5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1/3 이내)
- 상환기간 및 대출금리 : 1~3년, 은행별 기준금리
- 융자취급 금융기관 : 협약 금융기관 9개(수도권 내 지점에 한함)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하나, 산업, 씨티)

● 지원절차



문의 처 산업지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841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 지원대상

• 기술력은 있으나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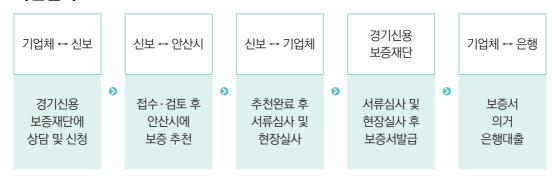
● 지원내용

• 지원규모: 71억원

• 지원방법: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 지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전년도 매출액의 1/3 범위 내)

● 지원절차



환경보전기금 융자 지원(이자차액 보전)

• 사업개요

• 기간: 2020. 1. ~ 12.

• 융자 금액: 업체당 10억원 이내

• 지원 금리: 대출금리 변동(안산시에서 대출이자 보전)

• 융자 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취급 은행 : 농협중앙회·기업은행·하나은행

• 담보 등 :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 지원대상

- 융자지원대상
 - 사업장이 안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시설을 구입·설치·변경하는 경우
 - · 악취 및 대기오염방지시설, 대기 TMS 설치
 - ·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시설(VOC 제거시설) 등
 - ·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TMS설치
 - ·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비
- 융자제외대상
 - 융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상시설을 이미 설치완료 하였거나 가동 중인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사업자
 - 다른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융자추천을 받은 사업자

● 지원내용

• 융자금 10억원 이내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보조지원

● 지원절차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Tel. 481-2906

소규모사업장 미세먼지 개선 보조금 지원

● 사업개요

• 기간: 2020. 1. ~ 12.

• 예산 : 73억원

• 지원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 사업대상

• 소규모사업장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지원

● 지원내용

- 보조금 지원 한도액
 - 교체설치 : 최대 2.7억원
 - · 설비별 용량별 한도액 환경부 사업지침 참조
- 보조금 지원 보조율
 - 예산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의 90% 이내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사업자부담 10%)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 · 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 및 공고 신청접수 (자체심사) 외부 평가 ▶ 위원회심의 (선정) 교부결정 ▶ 및 사업추진

완공확인 및 보조금지급

제 3 장

창업 및 혁신성장 사업화 지원

-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 창업 페스티벌(SUFIA) 개최
- 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
-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미래혁신기술 융합 신제품 · 신기술 개발 지원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
- 기술닥터 사업
-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 지원
-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 안산 IT · SW기업성장지원사업
-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
-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지원
-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
- 청정공정 확산 사업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 사업개요

- 대상 :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하여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
- 사업규모 : 청년큐브 3개소 50실(팀)
 - 한양캠프(사3동 한양타운 10실). 예대캠프(월피동 광덕시장 20실)
 - 초지캠프(초지동 신명트윈타워 20실)

● 지원내용

- 창업공간(사무실, 커뮤니티 공간, 기본집기 등) 및 회의실, 전시관 등 부대시설 제공
- 창업교육, 컨설팅, 멘토링 등 창업 지원

● 지원절차

• 입주신청: 청년큐브 홈페이지(https://www.youthcube.net)

입주신청 (홈페이지) 입주자 선정 (연도별) 입주팀 입주 및 사업 운영(창업 지원) 입주자 연차평가

● 청년큐브 현황 : 총 3개소

구분	예대캠프	한양캠프	초지캠프(CineLab안산)
조성연도	201	2017년	
캠프사진	THE PART OF THE PA		CINEL ABOLA
규모	20실, 816㎡	10실, 314㎡	20실, 2,578㎡
특징	영상, 공연 등 문화분야	IT(웹),게임개발 등 기술분야	(구)영화관 → 복합 창업공간 구축
-	창업공간 제공, 교육 · [마케팅·컨설팅 지원 등	사무공간, 팹랩, 공연장, 전시장 등

20

창업 페스티벌(SUFIA) 개최

● 사업개요

• 행사명 : SUFIA 안산 스타트업 페스티벌

• 행사일시: 2020. 11월경

• 장소 : 미정

• 참가대상 : 창업기업, 창업관심자, 시민 등

• 주최 : 안산시·SUFIA(Start-up United Festival In Ansan)

• 공동주관: 한양대, 안산대, 경기TP, 안산시

• 협력기관 : 중진공 POST-BI, 신안산대, 서울예대, 청년창업사관학교, 한국호텔 관광실용전문학교, 각 대학 창업동아리

• 주요내용

- 안산시 창업지원정책 및 창업지원기관 소개, 유공자 표창

- 창업 특강 & 토크콘서트

- 창업기업 홍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 채용(취업) 박람회, 창업마켓, 푸드트럭 운영 등



1인 크리에티터 특강



토크콘서트 "안산시 창업정책의 모든 것"



창업기업 홍보부스 및 창업마켓 운영

디지털제조 스튜디오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잠재력 있는 성장 단계 기업의 시장진입 및 제조 기술 지원

• 위 치: 초지동 원포공원1로 59(초지동) 초지캠프 내

• 운영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안산소재)

• 사업대상 : 관내 창업기업 및 중소 · 중견기업, 시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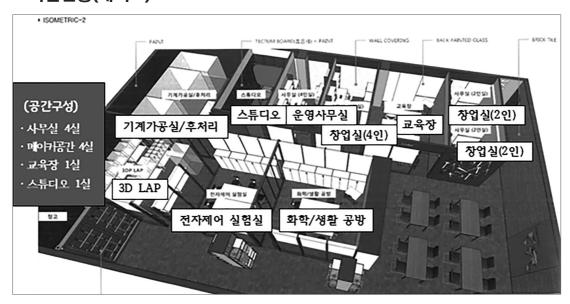
• 운영 시간 및 인력: 09:00~18:00 / 6명(TEAM LEADER 3명 + Operating Manager 3명)

• 신청방법: 청년큐브 홈페이지(https://www.vouthcube.net)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동작시제품 제작, 시생산제품 소비자테스트베드, 제조엔지니어링컨설팅, 사업화 블랜딩 통합 서비스, 디지털제조 아카데미 운영

● 시설현황(배치도)



문 의 처

안산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Tel. 031-481-3984 경기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센터팀 Tel. 031-492-9901/9948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IP) 신청건에 대하여 타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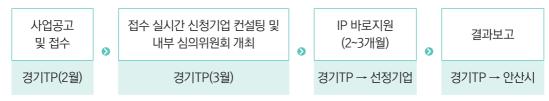
• 지원규모 : 총 6건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한도	분담금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3D 영상 제작	접수당시 특허 등록건		
중소기업 IP	특허맵	IP동향 조사·분석	IP 조사분석 필요건		
바로지원 서비스	디자인맵	기자인맵 및 활용전략 수립		7101-1	30%
시미스	디자인개발	제품/포장/목업		기업당 2건	(현물 10% + 청구 20%)
	브랜드개발	신규/리뉴얼			현금 20%)
해외권리화 비용지원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서비스 결과물		
기타	국내·외 IP 컨설팅 중소기업 IP 컨설팅		-	-	없음

⁻ 전문 지도기관의 맞춤형 종합 컨설팅 제공

● 지원절차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624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Tel. 500-3046

[※] 보조금 교부 전 중도포기 또는 주사무소(본사)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 총 30개사

• 지원금액: 500만원/기업당 ※기업자부담: 지원금의 10%, VAT 별도(기업부담)

• 지원방법

- 선정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제품제작 지원분야를 선택

- 선택한 지원분야 수행기관을 기업이 직접 섭외하여 사업비 범위 내 과제 추진 (추가비용 및 부가세 기업부담)

지원분야	지원내용	지원 기업수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제품디자인 설계(Design Mock-up 포함) 시제품제작(워킹목업) 금형제작 	30개사 (5백만원/기업)
예시〉		

● 지원절차

지원사업 선정평가 사업 완료 사업과제 최종평가 0 0 0 신청접수 협약체결 수행 결과물 제출 및 정산 경기TP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선정기업 ↔ 수행기업 선정기업 ↔ 수행기업 지급(잔액) (3월) 지급(50%)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624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Tel. 500-3046

미래혁신기술 융합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제조기업

지원규모: 총 5개 과제(20백만원/기업당)※ 10% 이상 기업자부담, VAT 별도(기업부담)

● 지원내용 : 신제품,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기존 제품에 혁신형 기술을 융합.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지원
- 신제품 개발부터 연구개발, 시험분석 및 인증을 통한 사업화 지원

● 미래혁신기술

- 미래선도기술 : 지능형인프라, 스마트이동체, 융합서비스, 혁신성장동력 관련 산업
- 미래유망기술: 신체증강휴먼, 웰니스 맞춤형관리, 인공장기 바이오 등 미래 유망기술 관련 분야
- 4차 산업혁명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지능형 반도체, 첨단소재, 드론 등

● 지원절차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2. ~ 12.

• 지원내용 : 주관기관 보유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안산시 중소기업에게 제품개발 연구장비

사용료 지원

• 예 산 : 총 96백만원(안산시 50백만원, 경기도 46백만원)

• 지원금액: 최대 800만원/기업당

※기업자부담: 지원금의 30%, VAT 별도(기업부담)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gginfra.gbsa.or.kr)

• 전담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 참여기관 : 39개 기관(도내 공공기관, 대학, 민간기업 등 연구장비 보유 1.629종)

● 지원절차



26

문 의 처

안산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 지원규모: 10개 과제 내외

- 과제당 안산시 지원금 48백만원 내외

- 기업 자부담 20% 이상(현금 20% 이상)

• 총사업비 : 5억원(전액시비)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일반과제 및 전략과제로 구분 추진

- 전략과제: 뿌리산업 업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내 자금, 인력 및 기술개발능력이 취약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성장 및 기술 고도화 지원 필요함(기업지원정책 소외기업 적극 발굴)

- 일반과제: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 지원범위 :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과제,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추가 기술 개발과제로 사업화 가능한 과제

• 기타 지원내용 : 전담기관 기업지원사업 연계 지원

- 현장애로기술지원, 전주기적 문제해결 지원(시험분석 지원) 등

● 지원절차

문의처

안산시 및 전담기관 접수 및 협약체결 및 최종평가 및 점페이지 공고 선정평가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산업지원본부 산업정책과 과학기술지원팀 Tel. 031-481-351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Tel. 031-500-3113

27

기술닥터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의 연구자원(인력·장비·기술·정보)을 활용한 기업 현장애로 기술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실현

• 사업기간 : 2020. 1. ~ 12.

•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 중소기업

• 사 업 비 : 768백만원(시비 538백만원, 도비 230백만원)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단계	프로그램 내용		기업부담	선정방법	
1단계	현장 기업의 애로기술 분야 기술닥터가 10회 이내 현장방문하여 애로기술지원 「1:1 맞춤형 애로해결」		-	예산범위 내	
	중기	일반	완료된 현장애로기술지원 과제를 기술닥터가 4개월 이내에서 추가 심화지원하여 시제품제작, 공정개선 등 구체적 성과물 도출	총	
2단계	애로 기술지원	고용 연계	대학의 지도교수와 함께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또는 과정 중의 인력이 4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을 지원하거나 퇴직 기술전문가가 3개월 이상 기업에 상주하면서 기술 지원	비용의 30%	선정평가
3단계	상용화	지원	신규 제품화 지원(제품설계, 디자인, 시제품제작, 시작금형 제작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 기술지원인력, 기술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 가능)을 통한 기업의 실질적인 매출, 고용 창출을 유도	총 비용의 30%	선정평가
단계별 검증 지원	시험년 설계/시듈 3D프린	레이션	각 단계별 필요한 각종 시험분석, 설계/시뮬레이션, 프린팅 등 지원	총 비용의 30%	선정평가

● 지원절차

전담기관 홈페이지 공고 http://tdoctor.gtp.or.kr 접수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 ▶ 및 지원금 지급 중간점검 및 결과보고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과학기술지원팀 Tel. 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지원팀 Tel. 500-3118

안산시 강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총 4년)

• 사 업 비 : 50억원(4년)

•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 중소 · 중견기업

• 전담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융합생산기술연구소)

• 수행기관 :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기관

• 사업내용 : 관내 우수기업과 안산사이언스밸리(ASV)기관 간 협업으로 R&D부터 사업화까지

연계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16개 과제

- 기술분야: ① 기계소재 ② 전기전자 ③ 화학 ④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

• 지원유형

- 시장창출 기술개발 기 확보된 기술의 심층 연구개발 및 시장 확대를 위한 사업화 지원
- 제조혁신 기술개발 시장 기술우위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 ASV협동 기술개발 2개 이상 ASV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컨소시엄 워크숍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과학기술지원팀 Tel. 481-296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합생산기술연구소 사업지원실 Tel. 8040-6055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 중개자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 기술거래촉진을 통한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발굴 및 글로벌 기술기업 창출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희망 중소기업
- 전담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 국내외 기술거래 수요 발굴 및 가공
- 기술사업화 컨설팅 및 자금 연계
- 글로벌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찾아가는 수요기술 공모장터



기술교류 박람회

● **지원절차** (세부 단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지원될 수 있음)

전담기관 상담 또는 공고

0

접수 및 선정평가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0

결과보고

문의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과학기술지원팀 Tel. 481-296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Tel. 500-3007

안산 IT·SW기업성장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IT·SW기업대상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및 경쟁력 강화

사업기간: 2020. 1. ~ 12.
사업비: 300백만원(전액시비)
지원대상: 안산시 IT·SW중소기업
전담기관: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 지원내용

- IT·SW 품질향상 지원(국내외 규격인증, 제품 시험분석 등)
- IT·SW 상용화 지원(기술권리화 지원, 제품 상용화 지원 등)
- 맞춤형 마케팅 지원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절차

문 의 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과학기술지원팀 Tel. 481-2967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Tel. 492-9948

경기도 뿌리산업 집중 육성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0. 1.~12.

• 사업비 : 1,230백만원(도 600백만원, 시 234백만원, 타 시군 396백만원)

• 주관기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 지원내용

• 뿌리기술 R&D 개발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 지원규모 : 기업 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뿌리기업의 기술개발, 시제품(금형틀 등) 제작비지원

• 뿌리기업 인증 획득 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 지원규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국내외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인증비용 지원

• 화학물질관리법 대응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 지원규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및 대행 컨설팅 지원, 법규에 따라 의무 구비 장비 지원

• 시험분석 지원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뿌리기업 - 지원규모 : 기업 당 1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뿌리산업과제(또는 제품)에 대한 시험분석(성능인증) 비용지원

● **지원절차** (세부 단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절차가 일부 생략되어 지원될 수 있음)

안산시 및 위탁기관 홈페이지 공고 접수 및 선정평가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0

중간평가 및 결과보고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산업진흥과 과학기술지원팀 Tel. 481-3517 경기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센터 Tel. 500-3007

안산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 ~ 12.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기초, 고도화)에 선정된 기업

• 지원규모

- 스마트공장 구축: 15개사 내외, 최대 1천만원 이내

- 고도화 지원: 9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이내

• 총 사업비 : 4억원(전액시비)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기초)
 - 제품설계,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구입 비용 지원 등
- 스마트공장 고도화
 - 기존 시스템의 개선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 및 연동 등

● 지원절차

 안산시 및 전담기관
 ★
 접수 및
 ★
 협약
 ★
 최종평가 및
 지원금

 홈페이지 공고
 선정평가
 체결
 ●
 결과보고
 지급

환경오염배출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원

● 사업개요

• 기간: 2020. 1. ~ 12.

• 구성 : 안산시(산단환경과),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 지원대상

- 환경오염방지시설 자금지원(보조금 및 융자) 사후관리 대상 및 기술지원 신청업체
-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사업장
- 민원유발업소 및 악취도 3도(관능법) 이상 악취다량배출사업장

● 지원내용

- 배출시설에 적합한 방지시설 선정 및 기술자문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문제점 해결과 악취발생 저감방안 지도
- 악취다량배출사업장 등 중점관리 대상사업장은 환경기술 전문기관인 안산녹색환경지원 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서 합동사후관리 및 기술지원

● 지원절차

기술지원 신청 및 접수 기업체 →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산단환경과)

0

기술지원 실시 및 지원결과 보고서 송부

청정 공정 확산 사업

● 사업개요

- 목적: 청정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지속가능한 산업구조 전환
- 기간 : 2020. 2. ~ 12.
- 예산 : 220백만원(국비 120백만원, 시비 100백만원)
- 사업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안산시
- 주관 기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코앤파트너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안산시 소재 10인 이상 상시 근무자의 중소기업
 - 도금, 염색, 기계, 부품 등 제조기반 중소기업
 - 녹색기술 보유기업

● 지원내용

- 청정 생산 진단지도 컨설팅
 -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진단·지도
 - 자원 생산성 향상 진단·지도
 - 용수, 폐기물 등 산업 환경 이슈 해결
 - 화학물질 규제 대응 체계구축 및 지도
 - 환경보고서, 환경관련 인증획득 지원 등

● 지원절차

대상사업장 사업 신청 및 사전진단 및 건설팅 지원 및 공모 접수 선정 개선실행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산단환경과 기술지원팀 Tel. 481-2906

제4장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해외유망시장 개척단 운영
-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G-Fair Korea 안산시 단체관 운영
- 해외지사화 사업
- 맞춤형 국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경기TP)

해외유망시장 개척단 운영

● 개요

• 시기 : 2020. 2. ~ 12.

• 파견지역

시기	파 견 국 가	규모	업체 최종선정
계	4회(7개 지역)	32개사	
6월	CIS(타슈켄트,알마티)	8개사	파견 1개월 이전
 7월	미국(LA)	8개사	"
9월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8개사	"
10월	인도(뭄바이, 첸나이)	8개사	"

• 파견규모 : 총 30개사 내외

• 상담품목 : 종합 품목

• 지원사항: 바이어 발굴, 현지시장 정보제공, 상담장 임차비 및 통역, 항공료 50%

※ 참가기업 부담: 항공료 50%, 숙박비, 식비 등 체재비

• 주요내용 : 사전매칭에 의한 바이어, 중소기업간 1:1 수출상담

● 지원절차

업체 모집

0

시장성 조사

0

업체 선정

바이어 사전 매칭 0

해외현지 수출상담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281

국내외 무역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 개요

• 모집기간 : 2020년 2월 예정(연 1회)

• 대상 : 관내 중소제조기업

• 지원규모

- 국내 12개사(업체별 200만원 이내)

- 해외 11개사(업체별 500만원 이내)

• 지원사항

- 국내 : 부스임차료, 장치 설치비

- 해외: 부스임차료, 장치 설치비, 물품 운송비, 1인 항공료 50%

● **지원절차**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1월)

신청접수 (2월) 업체선정 (3월) 개별참가 후 보조금신청 (3월~) 사업비 교부 (3월~)







G-Fair Korea 안산시 단체관 운영

● G-Fair Korea(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개요

• 특 징: 국내 최대규모의 중소기업 전문 전시회

• 개최장소 : 고양 KINTEX

• 전시품목: 종합품목(생활용품, 레저용품, 의료용품, IT제품 등)

● 2020 안산시 단체관 운영 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기업

• 규 모: 15부스/15개사 내외(부스 당 12m²)

• 참여업체 모집: 2020년 5월경

• 참가업체 지원사항

- 기본 조립부스(안내데스크, 상담테이블, 의자, 전기 등 비품 포함) 지원

- 국내외 바이어 연계 지원(수출·구매상담) 및 각종 홍보 지원

※ 1개 社 당 1부스 지원 - 추가 부스 신청 시 기업 부담



전경1 – 안산기업 단체관



전경2 – 안산기업 단체관 지원 사례

● **지원절차**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참가기업 참가기업 사전 전시회 평가 및 모집 준비 참가 선정 정산 전시회 5월 5월 9월 10월 종료 후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093

해외지사화 사업

● 개요

- 모집기간: 2020년 상·하반기(연 2회)
- 지원기간 : 지사화사업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 지원대상: 관내 중소제조기업 10개사 내외
- 지원규모: 업체당 250만원 이내(해외지사화사업 참가비의 70%)
- 사업비 : 2천만원
- 지원사항
 - 신규바이어 및 시장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반응조사 등 제반활동 지원
 -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성 조사
 - 현지 세일즈 출장시 제반활동 지원
 - 기존 거래선 관리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지원절차**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1월)

신청접수 (2월) 업체선정 (3월) 사업참가 후 보조금신청 (3월~) 사업비 교부 (3월~)

맞춤형 국내외 온라인 홍보 마케팅 지원

● 개요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 제조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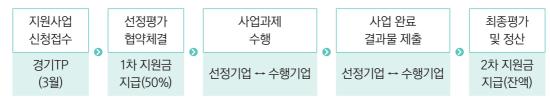
• 지원규모 : 총 40개사(3백만원/기업당) (※10% 이상 기업 자부담, VAT 별도)

• 지원내용

지원사업	지원내용	기업수
온라인마케팅지원	(국문/영문) 홈페이지/쇼핑몰 제작 및 리뉴얼 국내외 포털사이트 키워드 광고 및 검색엔진마케팅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지원 온라인 오픈마켓(옥션, G마켓, 11번가) 등록 및 광고지원 네이버 스토어팜 쇼핑몰 입점 및 구축 SNS(블로그/페이스북) 제작	총 40개사
제품 홍보 디자인개발 지원	 ・카달로그 및 브로셔 제작 ・제품홍보 상세페이지 제작 〈국문/영문〉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포스터 및 배너 제작 	(3백만원/ 기업당)
해외마케팅지원	• 해외마케팅 전문기관(콤파스, ec21, 알리바바, eBay 등)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바이어 발굴 및 해외 수출 판로 개척지원)	

● 지원절차

문 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624 경기테크노파크 기술경영지원팀 Tel. 500-3017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

● 사업목적

-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 및 상품화 유도
- 민속공예기술 전승 및 우수공예품의 판로기반 조성
- 관내 공예품 생산업체 및 시민에게 경기도공예품대전 출품기회 부여

● 사업개요

• 지원대상: 관내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 사 업 비 : 5백만원

• 지원금액: 업체당 1백만원 내외

• 지원분야 : 전통공예의 기술과 조형성 등을 기본 바탕으로 현대적 디자인 트렌드에 부합되며,

아름다움과 상품성이 결합된 창의적 공예품(목·칠, 도자, 금속, 섬유, 기타공예 등 6개 분야)

• 추진절차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1월)

● 신청 접수 (2월) 지원대상 **3** 결정 (3월) 경기도 공예품 ▶ 대전 출품 (5~6월)

보조금 정산검사 (7월)







0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 운영(경기TP)

● 사업개요

• 설치장소 : (재)경기테크노파크 1층 로비(상록구 해안로 705, 사동)

• 대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본사 또는 공장) 제품

• 전시비용: 무료

• 전시규모: 8개 전시부스

• 전시부스규격(가로 × 세로 × 높이): 70cm × 50cm × 90cm

● 제품전시기간: 2020, 1, ~ 2021, 12,(2년간)

- 2020년~2021년 신규모집 완료(2020년 1월)
- 전시기간 만료 후 신규모집은 2021년 11월 공고예정
- 추진절차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계획수립 및 사업공고 (11월)

신청 접수 (11월) 지원대상 결정 (12월)

제품반출 신규입점 (1월초)

0

제품

전시

(2년)





제 5 장 기업환경 개선 지원

- 기업SOS넷 운영(기업애로 해소)
- 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
-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 기업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

스마트허브 공동통근버스 운영

● 통근버스 운영 개요

• 운행기간 : 연중

• 운행대수 : 45인승 10대(안산 5대, 시흥 5대)

• 운영형태: 전철역* 연계 산업단지 내 출퇴근 셔틀버스 방식

*5개역(안산역, 원시역, 상록수역, 오이도역, 정왕역)

• 운행횟수 : 1일 45회(출근 20회, 퇴근 25회 / 안산, 시흥 각 5개 노선)

• 이용요금 : 무료(추후 유료로 변경될 수 있음)

● 운행노선 및 시간표

구분	호차	출근시간	퇴근시간	주요노선(경유지) ※퇴근은 역순
	1	07:00/07:50	17:40/18:40/19:35	오이도역→에스티팜→단석산업→대성산업→서울제약 →MTV단지 대용산업→비케이스틸
시	2	07:00/07:45	17:40/18:35/19:35	정왕역→시흥초교→대원스틸→대한통운→대한강재 →MTV단지 한림금형강
흥 권	3	07:00/07:55	17:40/18:40/19:40	정왕역→산기대→유통상가→덕산파이프→태양에스티 →MTV단지 아남→진명프리텍
역	4	06:55/07:55	17:40/18:45/19:25	정왕역→캡쎈→만수철강→제이엔피→가경철강 →MTV단지 신영공업식당
	5	07:00/07:50	17:40/18:35/19:20	정왕역→글로비스자동차→코포모→대덕전자 →두성특장차→원우정공
	1	06:40/07:30	17:40/18:40	안산역→중소기업지원센터→(주)에이디티→근린공원 →필립스→백산철강→부성특수파이프→대신전선 →신기산업
안	2	06:40/07:30	17:40/18:40	안산역→원정제관→다원타크라3차→우리조명 →축협안산연합사료→동아기계→삼화페인트→성림유화 →신광정공
산 권 역	3	06:30/07:40	17:40/18:40	안산역→신광테크놀러지→삼보오토→삼천리열처리 →에스엠텍(피오씨)→삼양통상사거리 →반월중앙피혁협동조합→(주)휴메드
•	4	06:30/07:30	17:40/18:40	원시역→에스씨엘→광천에스티→오알켐→모렉스 →캐논코리아→산일전기→다원시스
	5	06:20/07:30	17:40/19:40	상록수역→푸른마을5단지→방림→진양제약→대진동관 →현대합성→반월중앙피혁협동조합→삼화페인트2공장 →성림유화→일신→베스텍

※ 운행시간 및 노선은 변경될 수 있으니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624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본부 Tel. 070-8895-7597

반월·시화국가 산업단지 공동 출퇴근 셔틀버스 노선도

기업 SOS넷 운영(기업애로 해소)

● 기업 SOS넷 운영 개요

• 접속주소 : http://giupsos.or.kr

• 가입대상 : 기업 및 경제단체의 임직원

- 기업체: 대표이사, 관리부장, 총무과장 등

- 경제단체: 회장, 총무, 단체회원 등

- 내용
 - 기업애로 접수 및 해소
 - 기업 지원사업 안내
 - 관내 중소기업 완제품 홍보
 - 안산시 구인·구직 홍보

● 기업애로 처리절차

온라인 회원가입 및 애로사항 입력

처리담당 0

애로해소 및 0 처리과정 입력

0

사후 관리

● 기업애로 해소 유관기관

- 안산상공회의소(회원사업팀 410-3030(내선 11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서부센터 432-2400)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입주지원팀 070-8895-7539)

지정

• (재)경기테크노파크(기업지원단 500-3084)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 개요

• 지원대상: 관내 소재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규모: 약 10개 기업

※ 지원 업체 수는 지원 금액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작업장, 기숙사(공장 내), 식당, 화장실, 샤워실(탈의실, 세탁실 포함),

휴게실 개·보수 비용의 보조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작업 공간 및 작업 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LED조명설치(작업공간만 해당), 자체 소방 설비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 되지 않은 비용(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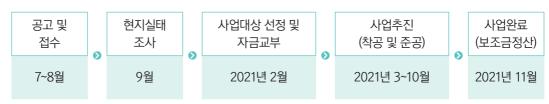
• 지원한도: 개소 당 3천만원 이내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종사자 수 10인 미만 영세업체의 경우 자부담 30%

● 선정절차

문의처

관련기관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허가팀 Tel. 481-2092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Tel. 8030-3034

기업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0. 2. ~ 11.

• 지원대상: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 희망 기업 2개소

• 지원금액 : 26백만원(1개소당 13백만원)

• 지원내용 : 산업단지지역 근로자들의 독서량 증대를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

(서가, 책상 등 운영물품 및 도서 구입지원)

• 선정기준

- 안산시 관내 기업체

- 50인 이상 근로자 고용 기업 우선 선정
- 향후 지속적 운영 가능 여부 고려
- 시설규모 및 공간 구성의 적절성, 인근 이용자들의 접근성 등

● 선정절차

수요 조사	•	지원대상 선정	0	운영물품 및 도서구입 지원	•	작은도서관 개관
2~3월		4월		5월~10월		11월

● 홍보사진



2019년 ㈜인바이오텍 기업체 작은 도서관 개관식



기업체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행사 지원

문의 처

평생학습원 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팀 Tel. 481-2707

기반시설 정비 및 재해 예방 관리

● 기반시설 정비

- 기업민원처리 안산스마트허브 내 기반시설(보·차도, 가로등, 보안등)정비
 - 기업체 민원사항(전화, 인터넷, 방문 등)우선 반영
 -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의 도로정비 건의사항 반영
 - 현장점검을 통한 노후 심화정도, 차량 및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간 선정

● 도로 재해(설해 및 수해) 예방 관리

- 우기철 도로 수해방지 및 동절기 제설작업 종합대책 수립
- 자체 장비 및 자재 확보
- 제설차량 15톤 5대(임차), 5톤 1대(임차), 1톤 1대(자차)
- 제설제 살포기 7대(15톤 5대, 5톤 1대, 1톤 1대), 제설자재(염화칼슘, 소금)
-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작업을 실시하면서 보조간선도로 병행 실시

● 협조사항

-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발생 예상지역 및 재해 위험지역 즉시 신고
- 우기·동절기 기업체별로 「내 공장 앞 빗물받이 청소 및 동절기 눈치우기」 협조





정비 전

정비 후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반시설팀 Tel. 481-2095

제 6 장 기업민원 처리

- ONE-STOP 공장설립(등록) 민원 처리
- 건축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 도로 점용허가 신청 및 민원 처리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기타 제증명 발급

ONE-STOP 공장설립(등록) 민원 처리

● 개요

공장설립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업체에 현장 방문하여 민원처리

● 기간

연중

● 대상지역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 공업지역, 개별입지

● 대상업무 : 공장등록 관련 모든 민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 : 500m² 이상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 승인 등
- 제조시설설치 승인: 기존공장에 500m² 이상 제조시설 설치 승인 등
- 대상지역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
 - 대상지역 안에서 제조업 영위를 위한 입주계약(변경) 신청 등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산업단지 입주업체, 공장설립(제조시설 설치) 승인사항의 완료신고
- 공장등록및등록변경: 500m² 미만 공장의 등록 및 등록공장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처분신고(처분신청):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신고(신청)
- 임대신고: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 신고
 - ▶ 반월 · 시화국가산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관리(설립 · 등록 등)
 - 반월국가산업단지 Tel. 070-8895-7536~9
 - 시화국가산업단지 Tel. 070-8895-7551~9
 - ▶ MTV 국가산업단지 :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화지사 시화MTV사무소 관리(설립·등록 등)
 - 멀티테크노밸리(MTV) Tel. 070-8895-7542~3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허가팀 Tel. 481-2845

건축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처리

● 건축 허가·신고

- 관련법규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건축법 제14조(건축 신고)
- 처리절차
 - 접수: 세움터(www.eais.go.kr) 전자접수
 - 서류확인 검토: 관계법령 적합여부 협의 및 서류검토
 - 허가여부 결정 : 서류확인 검토 사항이 적정할 경우 허가처리
 - 결과알림 : 허가조건 및 허가에 따른 수수료 고지 - 허가/신고 필증 교부 : 방문 시 교부 또는 우편발송



• 수수료 : 안산시 건축조례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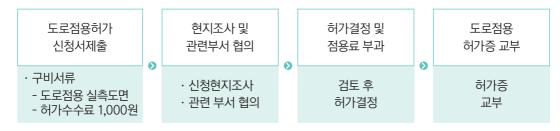
- 관련법규
 -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 구비사항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배치도 1부
 - 평면도 1부
 - 대지사용승락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수수료 : 안산시 건축조례 별표1에 정하는 수수료

도로 점용허가 민원 처리

● 도로점용허가 대상

- 관련법규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 허가대상 : 도로상에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 전주·전선·변압탑·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가스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주유소·주차장·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철도·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간판·표지·깃대·주차미터기 · 현수막 및 아치
- 공사용 판자벽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고가도로 밑 사무소·점포·체육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위 이외의 것으로 당해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추진절차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반시설팀 Tel. 481-2096

주민등록 등·초본 및 기타 제증명 발급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 구비서류
- 본인(세대주 및 세대원) 신청 시 : 신분증
- 타인 신청 시: 위임자·피위임자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위임장, 이해관계서류
- 수수료 : 400원(관내 및 타 시·군 동일), 500원(이해관계인)

●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구비사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신청 발급만 가능)
- 본인 신청 시
 -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 ㆍ재외국민 : 여권
 - ·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발급대상자가 직접 작성한)위임장, 위임자·피위임자 신분증, 위임자 도장 ※ 민원 창구에서 방문자가 작성하는 위임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수료 : 인감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00원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온라인/오프라인 발급)

- 온라인 발급 : 민원24시를 통한 신청 → 기업지원과 처리 → 신청인 온라인 출력(수수료 700원)
- 오프라인 발급 : 기업지원과 방문 신청 → 공장등록 여부 확인 후 즉시 발급(수수료 1,000원)
- 구비서류(오프라인) : [대표자 신청] 신분증

[대리인(직원) 신청] - 위임자·피위임자 신분증, 대표자 도장(또는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원증(또는 재직증명서)

●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 (단원구청 1층 농협 365코너 내)

- 운영시간: 07:00~22:00(365일)
- 발급서류 :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 ※ 기타 무인민원발급 창구: 안산시청, 와동, 호수동, 초지동, 고대병원, 원곡동 라성상가 등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Tel. 481-2093

제 7 장 일자리 지원

- 안산일자리센터운영
- 안산919 취업광장 운영
-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안산 일자리센터 운영

● 개요

- 위치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상담인원: 6명
- 주요업무
 - 구인신청 등록, 구직자 알선 및 인재정보 제공
 - 구직신청 등록 및 상담, 취업알선, 채용정보 제공
 -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취업정보 제공(www.iansan.net → 분야별정보 → 경제일자리 → 취업정보)
 - 인근지역 소재 기업의 최근 채용정보 제공(직종별 구분)
- **지원내용**: 구인·구직 알선, 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 취업박람회 개최

● 지원절차

• 구인업체

구인	1용안정 취업알선 성보망에 ○ (구직자 입력 맞춤알선)	● 전화상담 및 면접	채용 (미채용업체는 사후관리)
----	---	----------------	------------------------

• 구직자

구직 → 구직등록 워크넷 상담 → (신분 확인) → (고용안정 정보망)에 입력		전화상담 및 면접	채용 (미채용자는 사후관리)
---	--	--------------	-----------------------

※ 구인등록은 2개월, 구직등록은 3개월간 유효하며, 지정된 기간 경과 시 재등록해야 취업알선이 가능함.

● 관련사진



안산시 일자리센터(안산시청 민원동 2층)

문의처 기획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팀 Tel. 481-2278

안산919 취업광장 운영

● 개요

• 일시 : 매월 19일 14:00~16:00(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장소 : 안산시청 민원동(2층) 대회의실

• 참여방법

- 구인업체: 행사 2~3일전까지 행사 참가신청서 선착순(Fax. 403-9191) 제출

- 구직자: 이력서, 자격증 등 취업관련서류를 지참하여 행사 당일 참여

● 지원내용

• 구인·구직자 현장면접에 의한 인력 채용

- 구인업체: 부스별 구인업체 인사담당자 1~2명 배치

- 구직자 : 구직표 작성 후 구인업체와 면접

• 기타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관련 각종상담 및 안내

● 지원절차

• 구인업체

구인업체 중	구직표	면접	취업관련	○ 귀가
희망업체 선정	작성	(해당부스)	상담	

• 구직자

참가신청서 면접기록지 수령 (행사당일)	부스번호에 착석	면접	면접기록지 제출	귀가
-----------------------	-------------	----	-------------	----

※ 구인업체에서는 면접 기록지를 안산일자리센터에 제출

● 관련사진





문의 처

기획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팀 Tel. 481-2277

동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 사업개요

•목 적: 일자리 지원의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하여 대주민 취업 지원

운영기간: 2020. 1. ~ 12.

• 운영장소 : 25개 동 행정복지센터 • 운영인력 : 전문 직업상담사

● 지원내용

• 동네 구인 · 구직자 취업알선 상담

• 상설 면접장 운영

• 희망 일 드림 박람회 개최(2020. 10월 예정)

0

● 지원절차

구인・구직 접수

정보제공

알선 > (구인처 발굴 및 구인 구직 매칭)

취업

● 관련사진





동행정복지센터 상담창구

문 의 처

기획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팀 Tel. 481-2882

제 8 장

기타 정보

- 중소기업 확인 요령
-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요령
-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
-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연락처

중소기업 확인 요령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신청서류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등

● 발급절차

- 회원가입 로그인(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먼저 회원가입)
- 자료제출 확인서 발급을 위해 필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출(원칙)
 - 온라인으로 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 등은 지방중기청으로 해당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제출
- 확인서 발급신청 메뉴 "중소기업 확인"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
 - 신청기업 및 신청자 정보 입력
- 확인서 발급완료 제출서류 등을 기초로 중소기업 여부 자동판정
 - 발급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출

● 유효기간

•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신청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문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Tel. 201-6937, 6938

제조업 등 사업장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요령

● 제출대상

• 대상업종 :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13개 업종

0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5. 식료품 제조업

0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8. 기타 제품 제조업

0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 대상시설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 제출시기 :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제출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및 첨부서류 2부

● 제출방법

• 제출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 심사수수료 납부 : 계획서 제출 후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0호)

종류	규모	수수료(원)
13대업종에서 일관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이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이 2,000kW 이상	84,000 123,000 183,000
13대업종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이전·변경하는 경우	-	67,000
5개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5개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 위반시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문 의 처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 Tel. 481-7511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 안내

● 신고 대상 및 시기

•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거나 제조시설 설치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 구비 서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의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 과태료 부과기준

(단위: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호	90 100	90 100	90 100
나. 법 제13조제1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 단서 및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승인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2호	90 100	90 100	90 100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3호	90 100	90 100	90 100
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준건축면적률에 적합하도록 요건을 갖추어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사업을시작한 경우 1)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4호	90 100	90 100	90 100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5호	90 100	90 100	90 100	
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경우 1) 공장부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공장부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 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6호	90 100	90 100	90	
사.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7호	60 70	60 70	60 70	
아.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 지연신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신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8호	150 200	150 200	150 200	
자.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말한다)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9호	50	50	50	
차.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1)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임대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1호	280 300	280 300	280 300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카. 법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한 경우 1)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미만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2) 양도한 산업용지 면적이 3,300㎡ 이상이거나 공장등 건축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2호	280	280	280	
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1)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지연양도기간이 1개월 이상이거나 양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3호	280 300	280 300	280 300	
파. 법 제40조의2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4호	300	300	300	
하.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5호	500	500	500	
거. 법 제45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한국산업단지 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0호	80	90	100	
너.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 제1항제6호	180	190	200	
더.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2) 지연보고기간이 10일 이상이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제11호	40 50	40 50	40 50	

문의 처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허가팀 Tel. 481-2845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려는 사업장

● 구비 서류

- 대기 배출시설 사업장
 - 신청서 1부
 -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

행위를 한 경우

- 방지시설의 일반도 등
- 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 신청서 1부
 - 폐수 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 배출공정 흐름도 1부
 - 원료 및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1부 등

과태료 부과기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3차 이상 가,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법 제82조 제1항제1호 500 700 1,000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나. 법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기록·보존 법 제82조 제1항제2호 500 700 1,000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 보존한 경우 다. 법 제15조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1) 물로만 세차한 경우 50 50 50 법 제82조 제3항제1호 2) 합성세제, 물비누 등으로 세차하여 현저히 100 100 100 수질오염을 유발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1호

300

300

(단위: 만원)

300

과태료 금액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마.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2호	100	100	100
바. 법 제33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3호	60	80	100
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3호	200	600	1,000
아. 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자. 법 제38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3호	200	200	200
차. 법 제3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4호	100	150	200
카.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 (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4호	200	600	1,000
타.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5호	200	600	1,000
파.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하. 법 제6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4호	60	80	100
거. 법 제6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2항제6호	100	200	300
너. 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골프장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6호	1,000	1,000	1,000
더. 법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500	700	1,000
러. 법 제6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의 경우	법 제82조 제1항제7호	200	600	1,000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머. 법 제6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5호	60	80	100
버.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82조 제3항제6호	60	80	100

● 과태료 부과기준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 만원)

		과태료 금액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관리방안에 따라 냉매를 적절하게 관리·회수·처리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	100	100	100
나.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1호의2	60	80	100
다. 법 제31조제1항제3호나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호	200	200	200
라.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 상황을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1호	100	200	300
마. 법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3호	200	200	200
바.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4호	200	200	200
사.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5호	100	150	200
아.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1호	200	300	500
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2호	60	80	100

		과태료 금액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카.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1,000	1,000	1,000	
타. 법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1항	500	800	1,000	
파.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시멘트·석탄·토사 등 가루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6호	120	160	200	
하.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	60	80	100	
거.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너.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200	200	200	
더.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2	100	100	100	
러. 법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3호의3	100	100	100	
머. 법 제51조제5항(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9호	100	150	200	
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0호	100	150	200	
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 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50	100	300	
어. 법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5항제5호	5	5	5	

		과태료 금액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저. 법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1호	100	150	200	
처. 법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_			
1)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만료일 부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3일 초과 시 마다	법 제94조 제6항	2			
커. 법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6호	60	80	100	
터. 법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전문정비사업자	법 제94조 제5항제6호의2	60	80	100	
퍼. 법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2호	100	150	200	
허. 법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않거나 정비·점검 및 확인 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7호	60	80	100	
고. 법 제7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않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3호	100	150	200	
노. 법 제7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14호	100	150	200	
도. 법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2호	200	300	(3차) 400 (4차 이상) 500	
로.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8호	60	80	100	
모.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94조 제5항제9호	60	80	100	

문의처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Tel. 8008-8209

폐기물 배출사업장 신고 안내

● 대상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신고 내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 실적보고 등

● 구비 서류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및 구비서류(문의처 연락)

● 과태료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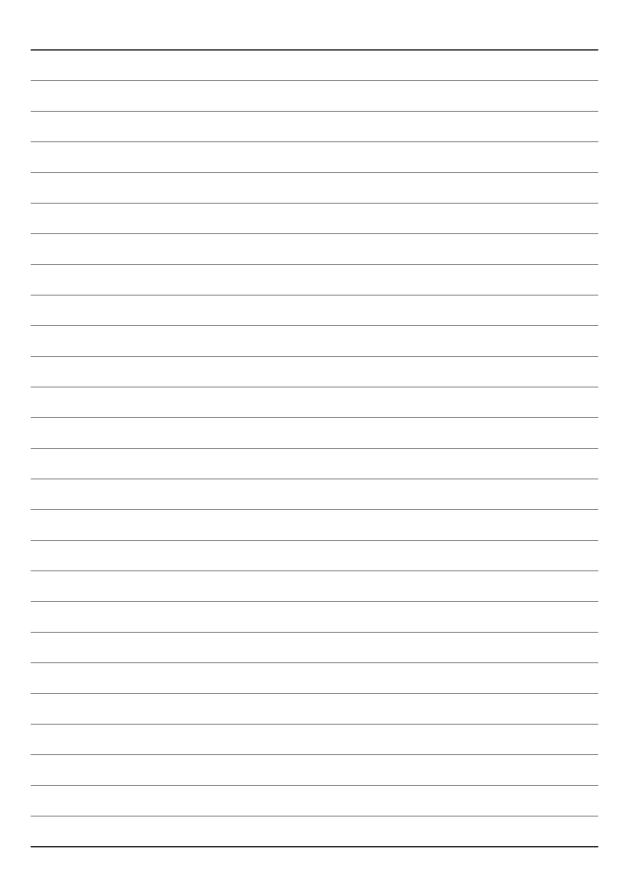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 실적보고서를 기한(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처리 법정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 폐기물 처리 기준이 부적정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 과태료·벌금·수수료 등 정확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외 사업장: 안산시 자원순환과 Tel. 481-3532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 안산시 산단환경과 Tel. 481-2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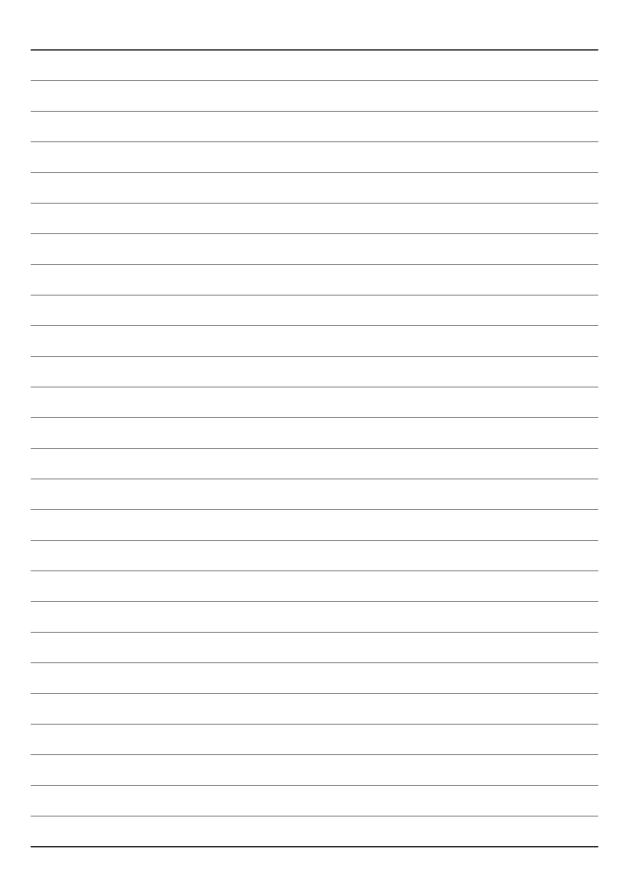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연락처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gyeonggi	Tel. 031-201-6800
안산세관	www.customs.go.kr	Tel. 031-8085-3880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공장설립 등)	www.kicox.or.kr	Tel. 070-8895-7599
한국산업인력공단	www.hrdkorea.or.kr	Tel. 1644-8000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Tel. 132
중소기업진흥공단(정책자금 등)	www.sbc.or.kr	Tel. 1357
기술보증기금	www.kibo.or.kr	Tel. 1544-1120
경기신용보증재단(안산)	www.gcgf.or.kr	Tel. 031-482-8402
안산상공회의소	ansancci.korcham.net	Tel. 031-410-3030
경기테크노파크	www.gtp.or.kr	Tel. 031-500-300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센터	www.gbsa.or.kr/	Tel. 031-432-2400
한국나노기술원	www.kanc.re.kr	Tel. 031-546-6000
안산고용노동지청	www.moel.go.kr/ansan	Tel. 031-412-1992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http://gyeonggi.wbiz.or.kr	Tel. 031-211-0292

MEMO			



MEMO			



MEMO			